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의 승객,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7.

덕 군 수

안전운항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자(선장, 선원포함) 및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영업시간)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이하“낚시어선”이라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영업시간은 04:00~20:00까지**로 한다. 다만 선외기를 설치한 낚시어선 및 레이더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 후 부터 일몰 30분 전 까지로 한다.

제 4 조(안전운항 등 준수사항)

-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업자는 출항전에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제반 준수사항 및 선장의 지도·요구 사항을 따라야 함을 교육 하여야 한다.
 2. 낚시어선업자(선장·선원) 및 승객은 안전을 위하여 승선과 동시 하선시 까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3.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한 때에는 상호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기상악화등 긴급상황 발생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신고 조치 하여야 한다.
 4. 낚시어선업자는 타 법에 의해 제한 또는 통제된 구역으로 낚시객을 안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낚시어선업자가 경상북도내 타 시·군의 관할수역으로 안내할 때에는 해당구역 관할 시장·군수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한 준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② 낚시어선 승객은 안전운항,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지도내용 및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3. 선내에서 음주 행위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안전 대피 또는 철수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승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5. 바다에 오·폐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낚시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6.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류의 금지채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낚시중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구명조끼는 착용한다.

제 5 조(기타 준수사항)

- ① 낚시어선업자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낚시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토록 지도 하여야 한다.
- ②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고시 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게 낚시어선에 게시 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영덕군 고시 제 2006- 364호는 폐지한다.